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장철민의원 · 김종민의원 · 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8.

발 의 자 : 장철민 · 김종민 · 정혜경
손 술 · 윤종오 · 전종덕
임호선 · 강준현 · 서왕진
이정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 · 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,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,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해 점검결과의 객관성 ·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 · 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

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 신설).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안전점검등의 실시)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에서 조사·측정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점검등이 2명 이상을 1조로 구성하여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정기안전점검 중 시설물의 종류·규모·안전등급, 점검 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 사람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를 구성하는 사람의 자격 및 구성, 실시기록, 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0조의2(안전점검등의 실시) ①</u> <u>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</u> <u>안전점검등을 실시하여야 하는</u> <u>자는 안전점검등을 위하여 시</u> <u>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에</u> <u>서 조사·측정 또는 시험을 실</u> <u>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점</u> <u>검등이 2명 이상을 1조로 구성</u> <u>하여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다만, 정기안전점검 중 시설물</u> <u>의 종류·규모·안전등급, 점검</u> <u>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</u> <u>때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</u> <u>자의 안전과 점검결과의 신뢰</u> <u>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</u> <u>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u> <u>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②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</u> <u>1항 본문에 따른 안전점검등을</u> <u>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</u> <u>점검등을 수행하는 사람 2명</u> <u>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</u> <u>여야 한다.</u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
를 구성하는 사람의 자격 및
구성, 실시기록, 제1항 단서에
따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
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기준,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으로 정한다.